

의안번호	2213947
의 퇴 인	강대식의원
회 답 일	2026.4.6.
추계번호	25D588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23억 9,800만원(연평균 44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361	5,298	5,933	6,566	239	22,398	4,4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 2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음(제2항) 이 경우, 현역병의 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20조의3 (단기복무 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하 이 조에서 “단기복무 부사관”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기복무 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0조의 2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	-
2	안 제20조의3 (단기복무 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 미대상: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단기 복무 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연도별 학급(특기) 확대,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등 군특성화고 운영에 필요한 추 가적인 지출요인이 있으나, 국방부는 기 수행 중인 기술인력육성 지원 사업(2026년 예산 85억 4,800 만원)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기 위해 현역병의 복무를 마쳐야 하나,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역병의 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제1항)
- 개정안에 따라 현역병을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현역병과 임기제부사관 간의 급여차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발생
-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 18개월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근무한 평균인원이 임기제부사관으로 조기입관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12개월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현역병의 복무를 마치지 않고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경우 임기는 2년 이상이어야 함
 - 개정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를 마치지 않고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과 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을 합하여 최소한 36개월의 군복무

를 해야 함

- 현행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를 마치고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개정안과 동일하게 36개월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임기제부사관으로 최소한 18개월 이상 군복무를 해야함
 - 즉, 현행법에 따라 현역병과 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을 합해 3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조기임관하면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첫 6개월간 현역병과 하사관 1호봉 간의 차액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받게 됨
 -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조기임관할 인원을 최근 5년간 18개월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한 평균인원으로 가정하고, 1인당 추가 지급 인건비는 상병급여 2개월분과 병장급여 4개월분에 장병내일준비적금 6개월분을 합한 금액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기제부사관으로 조기임관하여 4년간 근무하는 경우, 현재 18개월의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하여 4년간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됨에 따라 재정소요의 감소가 발생하는 점을 함께 고려함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2031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현역병과 하사관 급여차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현역병을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2년 이상 4년까지 복무할 경우, 현역병과 임기제부사관 간의 급여차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 (인원)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조기임관할 인원을 최근 5년간 18개월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한 평균인원인 1,088명으로 가정

[표 2] 복무기간별 임기제 부사관 인원(2020~2024년 평균)

(단위: 명, %)

구분	1년 미만	1~1.5년 미만	18개월 이상					계
			1.5~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년	소계	
인원	5,286	866	535	128	51	374	1,088	7,240
	(73.0)	(12.0)	(7.4)	(1.8)	(0.7)	(5.2)	(15.0)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역을 마치지 않고 조기임관하는 1,088명은 2년 이상 복무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차에 6개월간 하사2호봉과 하사1호봉의 급여 차이를 추가로 지급받음
- 조기임관하는 임기제부사관 중 2년 이상 근무하는 553명은 3년 차에 하사3호봉과 하사2호봉의 급여 차이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4년차에는 3년 이상 근무하는 425명이 하사4호봉과 하사3호봉의 급여 차이를 추가로 지급받음
- 조기임관하는 임기제부사관이 4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374명에 대해서는 6개월간 하사4호봉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재정소요 감소가 발생

[표 3] 급여 차이에 영향을 받는 인원 추정

(단위: 명)

인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하사1호봉-현역	1,088	1,088	1,088	1,088	1,088
하사2호봉-하사1호봉	0	1,088	1,088	1,088	1,088
하사3호봉-하사2호봉	0	0	553	553	553
하사4호봉-하사3호봉	0	0	0	425	425
전역-하사4호봉	0	0	0	0	374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건비 단가 차이) 개정안에 따라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할 경우와 현행법에 따라 18개월의 현역병을 마치고 복무할 경우의 급여 차이는 6개월분으로 산정함

[표 4] 현역병 및 하사관 급여 차이(6개월 기준)

(단위: 천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하사관 (6개월, A)	1호봉	15,708	16,180	16,665	17,165	17,680
	2호봉	16,087	16,570	17,067	17,579	18,106
	3호봉	16,246	16,734	17,236	17,753	18,285
	4호봉	16,405	16,898	17,404	17,927	18,464
현역병	상등병(2개월)	3,500	3,500	3,500	3,500	3,500
	병장(4개월)	8,200	8,200	8,200	8,200	8,200
	소계(B)	11,700	11,700	11,700	11,700	11,700
차이 (A-B)	하사1호봉-현역	4,008	4,480	4,965	5,465	5,980
	하사2호봉-하사1호봉	379	390	402	414	426
	하사3호봉-하사2호봉	159	164	169	174	179
	하사4호봉-하사3호봉	159	164	169	174	179
	전역-하사4호봉	-16,405	-16,898	-17,404	-17,927	-18,464

주: 하사 급여는 하사 1호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였고, 현역병은 봉급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합한 금액임
 자료: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2026.1.2.)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하도록 할 경우, 급여 차이와 급여 차이에 영향을 받는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 조기임관 임기제부사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인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하사1호봉-현역	4,361	4,874	5,402	5,946	6,506	27,090
하사2호봉-하사1호봉	0	424	437	450	464	1,776
하사3호봉-하사2호봉	0	0	93	96	99	288
하사4호봉-하사3호봉	0	0	0	74	76	150
전역-하사4호봉	0	0	0	0	-6,906	-6,906
합계	4,361	5,298	5,933	6,566	239	22,398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23억 9,800만원(연평균 44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361	5,298	5,933	6,566	239	22,398	4,4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최근 5년간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별 평균인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